

#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76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
- 산·학·연 연계를 통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략산업 육성 목적, 정의 및 기본방향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평창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(제6조 ~ 제1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에 0.3억원 반영되었음
- 다. 합 의 : 합의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22.01.13. ~ 2022.02.0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실-1783(2022.01.11.)호)
  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실-1783(2022.01.11.)호)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861(2022.01.11.)호)

##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전략산업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과 그 밖에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육성기본방향)** ① 군수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전략산업의 발굴·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·기술 개발·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4조(전략산업 육성 지원)** ① 군수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
2. 신사업 기획 및 연구
3.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

4.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
  5. 해외교류, 해외시장 진출, 홍보·마케팅 활성화
  6.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사업 평가)** 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회 설치)**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략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
1.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전략산업 육성의 선택과 변경,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3. 산업체와 기술협력,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

**제8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산업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원, 유관기관 관계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

2.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

3. 그 밖에 군수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회 개최)** ① 위원회 회의는 군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10조(위원의 해촉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11조(수당 및 자문료 등)**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략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비밀의 누설금지)**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3조(준용)**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취

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

### 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 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
#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 4조, 제 11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, 자문료, 지원 사업비

## 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연구개발비 및 인력양성 비용은 2023년 부터 적용

나. 추계 결과 : 연 138,000천원

- 자문료·여비 등 수당 : 8,000천원
- 지원사업 비용 : 130,000천원
  - 신기술 연구개발비 : 50,000천원
  -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비용 : 50,000천원(2차년도는 5,000천원 책정)
  - 학술연구 및 홍보비용 : 3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군비

## 3. 작성자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장 김 재 봉 |
| 연락처 | (033) 330 -2496         |

**< 연도별 비용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차년도<br>(2022년) | 2차년도<br>(2023년) | 3차년도<br>(2024년) | 4차년도<br>(2025년) | 5차년도<br>(2026년) | 계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세 출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38,000          | 93,000          | 138,000         | 138,000         | 138,000         | 545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여비등 수당         | 8,000           | 8,000           | 8,000           | 8,000           | 8,000           | 40,0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연구개발비용         | 0     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200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인력양성비용         | 0               | 5,000 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50,000          | 155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학술연구 및<br>홍보비용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30,000          | 150,000 |
| 재원 조달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38,000          | 93,000          | 138,000         | 138,000         | 138,000         | 545,000 |
| 의존<br>재원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부세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자체<br>수입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| 38,000          | 93,000          | 138,000         | 138,000         | 138,000         | 545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보통교부세          | 38,000          | 93,000          | 138,000         | 138,000         | 138,000         | 545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지방채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기 금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민간자본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해외자본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기타<br>(채무부담, 민자<br>등)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

[참고]

## 타 지자체 전략산업 육성 관련 조례 현황

| 연번 | 구 분     | 조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 | 강원도     |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     |     |
| 2  | 경기도     |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|     |
| 3  | 경상남도    |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|     |
| 4  | 충청북도    |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            |     |
| 5  | 부산광역시   |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         |     |
| 6  | 제주특별자치도 |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|     |
| 7  | 전라남도    |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            |     |
| 8  | 대전광역시   | 대전광역시 첨단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   |     |
| 9  | 충남 아산시  |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|     |
| 10 | 충남 서산시  |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     |     |
| 11 | 충북 충주시  | 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    |     |
| 12 | 전남 영광군  |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       |     |
| 13 | 전남 여수시  |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·지원 조례  |     |